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4. 7. 4.(목), 16:00
2. 장소 :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0	민조홍*, 김재욱**, 문혜성, 민병원, 장원경, 정연화, 박서림, 한은주, 오숙환, 김정권	안동인(간사)
불참인원	2	전현주, 이명경	

\* 의장 \*\*부의장

4. 안건  
 제1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5. 개회선언

- 가. 간사는 전현주, 이명경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전체 평의원 12명 중 10명 참석으로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나.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차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며, 전차 회의 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 2023학년도 결산안 자문 및 이화여자대학교 학칙과 대학원 학칙개정에 관한 심의가 있었음을 안내하다.

### 6. 안건 심의 및 논의

####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1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교육부 요청에 따라 의과대학 학생들이 유급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에 관한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0조제1항에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기의 구분 없이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제45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학기당 취득학점의 예외 적용 대상을 의학과에서 의과대학 전체로 확대하며, 학기당 취득학점 상한을 30학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45조제7항을 신설하여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학년 단위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년당 취득기준학점은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의 2배수로 하여 연간 최대 6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 (3) 김정권 평의원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번 학년도의 남은 기간 동안 60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4) 문혜성 평의원은 의과대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있고 방학이 2주에서 1개월까지밖에 되지 않아 계절학기도 들을 수 없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60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학칙 개정 시 학생들이 수업을 쉽게 철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다.
- (5) 김정권 평의원은 이번 학년도 남은 기간 동안 60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학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학칙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도입하자고 말하다.
- (6) 민병원 평의원은 타 대학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 (7) 간사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학교가 승인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고, 이번 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복귀하는 경우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학칙 개정의 목적이라고 발언하다. 취득학점의 상향 조정안은 의과대학 및 교무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설명하다.
- (8) 장원경 평의원은 학칙 개정안 제45조제7항에 의해 학년제로 교과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의 2배인 최대 60학점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교육할 수 있는지 질문하다.
- (9) 간사는 학칙 개정은 학년제 운영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시해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칙 개정 이후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10) 문혜성 평의원은 현실적으로 강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과대학 내부에서 대책을 수립한 뒤 이를 학칙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다.
- (11) 김정권 평의원은 학칙 개정안이 단과대학 내에서 논의되었는지 질문하다.
- (12) 문혜성 평의원은 본교 의과대학 내에서 논의하지 않았고, 타 대학들도 논의는 없으며 교육부에서 학년제로 전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만 공유되었다고 답변하다.
- (13) 간사는 본교 1학기 개시일은 학칙에 3월 1일로 정해져 있지만, 학기 개시일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어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며, 학교 본부에서는 의과대학 학

생들의 복귀를 기다리다가 학기 마감일 직전에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 (14) 문혜성 평의원은 현 의과대학 사태 해결만을 위한 학칙 개정은 절차상 무리한 부분이 있고 학칙 개정 후에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면 학칙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 불가피한 사태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을 선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다.
- (15) 김재욱 평의원은 학칙 개정안 제10조제1항이 단서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현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말하다.
- (16) 간사는 학칙 내에 특정 대학에만 적용되는 처분 규정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향후 학칙 원복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답변하다.
- (17) 김정권 평의원은 기존 학칙에도 학칙이 적용되는 단과대학을 명시하는 조항이 있어 특정 단과대학에만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발언하고,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의과대학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다.
- (18) 문혜성 평의원은 의과대학 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다.
- (19) 김정권 평의원은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 (20) 문혜성 평의원은 학칙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수업 시간과 학점 수를 반영한 학칙 개정은 무의미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다.
- (21) 의장은 의과대학 사태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지만 학칙 개정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른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다.
- (22) 문혜성 평의원은 현재로서는 이번 학년도 내에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다.
- (23) 김정권 평의원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는 것은 현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다.
- (24) 의장은 박서림 평의원에 대해 학칙 개정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들과 다른 학과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는지 질의하다.
- (25) 박서림 평의원은 의과대학 학생회를 통해 다른 의견은 듣지 못했으나 학칙 개정안은 사전에 전달받아 의과대학 학생회장단이 인지하고 있었던 개정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하였을 때 내부 사정 상 구체적인 내용 공유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타 학과 학생들은 의과대학 동맹 휴학 사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다. 더불어 학칙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개정안인지 질문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주체가 누구인지 질문하다.
- (26) 기획팀장은 학칙 개정안은 의과대학의 협조를 받아 교무처에서 발의하였으며,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확답할 수는 없으나 현 시점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위해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한다.

- (27) 문혜성 평의원은 의과대학의 협조를 얻었다고 하나 의과대학 내에서 학칙 개정안을 논의한 바 없어 의과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담은 개정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안은 의과대학 보직자들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다.
- (28) 민병원 평의원은 학칙 개정보다는 교육부에 제안하여 상위규범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하고,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과 내년에 입학할 학생들을 함께 구제할 수 있는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29) 김정권 평의원은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연관되는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규정의 형식만을 바꾸어서 유급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 (30) 의장은 궁극적으로 특별법을 마련하라는 것에는 모든 평의원이 공감할 것이라 말하며, 학칙 개정에 대하여는 투표로 의견을 정리할 것을 제안하다.
- (31) 박서림 평의원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개정안을 발의한 주체가 누구인지 재차 질의하다.
- (32) 기획팀장은 학사 관련 개정안이어서 교무처에서 발의하였고 의과대학의 협조를 받은 사안이라고 답변하다.
- (33) 문혜성 평의원은 학칙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협조한 결재자 외에 의과대학의 다른 구성원들에게까지는 학칙 개정안이 공유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평의원회가 개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다.
- (34) 김정권 평의원은 학칙 개정안 제10조제1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과대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특정하여 공유되어야 하는 개정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 (35) 의장은 실질적으로 개정 학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당사자는 의과대학 교수이고 학칙 개정에 따라 업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36) 민병원 평의원은 문혜성 평의원에게 의과대학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질의하다.
- (37) 문혜성 평의원은 현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과대학 교수들과도 교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변하다.
- (38) 김재욱 평의원은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이 들어오면 구성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 미리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 (39) 김정권 평의원은 학칙 개정안 적용대상이 의과대학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말고, 학칙 개

정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정안인지를 검토하자고 제안하다.

- (40) 장원경 평의원은 7월 1일자로 기획처에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칙 개정안 공고를 게시하고 7월 3일 오후 5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기간이 짧았다고 지적하다. 또한 연간 60학점을 취득하도록 할 경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지적하고, 학칙을 사안에 따라서 개정하고 반복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옳은 역할이 아니라고 말하다.
- (41) 김정권 평의원은 학칙 개정의 실익에 대해 재차 질문하다. 학칙 개정이 의과대학 한정이 아니라 향후 학교 전체의 탄력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데도 의과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경우라면 향후 치러야 할 대가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다.
- (42) 정연화 평의원은 교육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병원 평의원의 발언에 동의하고,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개정된 학칙대로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면 학칙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다.
- (43) 김정권 평의원은 재학생들이 유급을 하게 되면 신입생 모집에 문제가 있는지 질문하다.
- (44) 간사는 유급과 신입생 모집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고, 장원경 평의원이 지적한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기간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학칙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시점에 규정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지었고, 규정위원회 종료 후 대학평의회 시작 전까지 공지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다소 짧은 기간 동안 공고하게 되었다고 답변하다.
- (45) 한은주 평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보았던 것과 오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얼마나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열이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으며, 학사의 원칙인 학칙을 시기적인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다.
- (46) 간사는 대학평의회 규정상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7인 이상이 동의하여야 함을 설명하다.
- (47) 의장이 거수를 통해 동의 여부를 묻자 2명의 평의원이 동의하고, 8명의 평의원은 반대하다. 의장은 마지막으로 찬성 쪽 의견과 반대 쪽 의견을 청취하자고 제안하다.
- (48) 찬성한 평의원은 본교는 마곡 병원을 개원하여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강화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학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 사태에 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칙 개정안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찬성하였다고 말하다.
- (49) 반대 의견을 표한 평의원은 학칙 개정으로 교육이 파행적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우려,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 학칙 개정의 실효성이 없으며 학칙 개정보다 타 대학과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과 학칙 개정 후에도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어 반대하였다고 말하다.



(50) 간사는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유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재차 묻고, 평의원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나. 기타 논의사항

- (1)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 평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 (2) 간사는 현행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7명의 평의원이 출석하여 회의가 개최될 경우 참석 평의원 전원이 찬성하여야 의결이 될 수 있어 운영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다.
- (3) 평의원들은 지난 수년간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문제가 된 일이 없다면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모으다.
- (4) 간사는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해서 8. 28.과 8. 29.을 예정일로 제시하고, 추후 다시 안내하며 평의원들의 참석 가부를 확인할 것임을 말하다.

##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4년 7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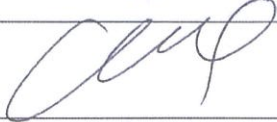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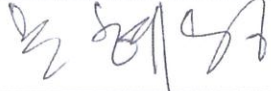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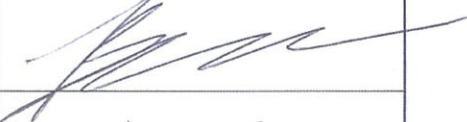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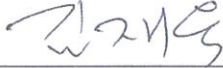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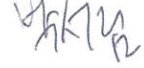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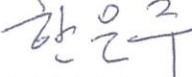

의 장 민 조 홍

민조홍 (인)

※ 2024년 8월 28일(수)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아래 내용에 따라 수정 후 재게시함.  
박서림 평의원이 전차 회의록 중, “(25) 박서림 평의원은 (중략) 의과대학 학장님과 학생들 간에 합의된 개정안이라는 점을 (후략)”을 “(25) 박서림 평의원은 (중략) 사전에 전달받아 의과대학 학생회장단이 인지하고 있었던 개정안이라는 점을 (후략)”으로 수정 요청. 참석위원 전원 동의에 따라 회의록 수정하여 재게시하기로 함.

## 대학평의원회 2024년 제3차 회의

일시	2024. 7. 4.(목) 16:00	장소	본관 대회의실
안건	1.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구분	성명	서명
교수 평의원	민조홍	
교수 평의원	문혜성	
교수 평의원	장원경	
교수 평의원	민병원	
직원 평의원	김재욱	
직원 평의원	정연화	
학생 평의원	박서림	
학생 평의원	전현주	
동창 평의원	이명경	
동창 평의원	한은주	
대학발전 평의원	오숙환	
대학발전 평의원	김정권	